

수영장 안전요원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수영장 안전요원
대분류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중분류	04 스포츠
소분류	02 스포츠시설
세분류	02 스포츠시설운영관리
직무수행내용	- 수영장 안전요원: 수영장 운영 및 안전 요원 업무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일반요건	<p><자격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특정업무직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른 수영장 안전요원 정년에 미달하는 자(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제한없음 - 자격요건: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자*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수상안전요원</p> <p><결격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교육요건	- 해당사항 없음
필요지식	- 스포츠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수영장 운영에 관한 기본지식, 시설물 점검 기본사항, 안전관계 법령, 사고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지식, 응급처치법, 스포츠시설 정보 및 용도, 안전·위생 기준, 인명구조요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지식, 안전 구조물품 및 안전장비 사용방법,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지식, 수영장 안전 준수에 관한 지식
필요기술	- 스포츠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비상시 안전구조 관련 매뉴얼 적용대처능력, 비상시 조치 및 대처능력, 심폐소생술 실시능력,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기술, 수영장 안전 조치 관련 필요 기술
직무수행태도	- 스포츠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수영장 안전과 관련한 규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치밀하고 정밀한 안전 점검 업무 수행자세,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응급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태도, 동료와 협력하는 태도
필요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우대자격	- 해당사항 없음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조직이해능력 <li style="width: 50%;">- 문제해결능력 <li style="width: 50%;">- 의사소통능력 <li style="width: 50%;">- 직업윤리 <li style="width: 50%;">- 수리능력 <li style="width: 50%;">- 자원관리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시설정비원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시설정비원		
대분류	15. 기계		23. 환경·에너지·안전
중분류	05. 기계장치설치		05. 에너지자원 06. 산업안전
소분류	02. 냉동공조설비		01. 에너지관리 01. 산업안전관리
세분류	03. 냉동공조유지 보수관리	05. 보일러운영관리	05.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운영관리 05. 가스안전관리
직무수행내용	- 시설정비원: 고용개발원 청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일반요건	<자격사항> - 연령: 공단 「특정업무직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른 정년에 미달하는 자(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제한없음 - 자격요건: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경력 유경험자 또는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교육요건	- 해당사항 없음		
필요지식	- 시설정비: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등)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등) 취급설명서 및 경보에 대한 지식, 자동연소 및 급수제어장치에 대한 이해		
필요기술	- 시설정비: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및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 급배수 설비(저수조, 급탕탱크, 배관 등) 및 각종 펌프류 등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위생설비(세면기, 싱크대, 청소수채, 오물수채, 소변기, 양변기 및 부속설비) 등 유지관리 및 보수, 냉난방, 온습도 관리 및 자동제어 설비 및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냉동기 및 냉동, 냉장고 등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 기타 기계설비 분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기계설비 도면 이해능력 및 기계설비 계통 판독 능력,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성 능력, 필요시 관련 기계설비에 대한 법정선임 가능, 각종 기계설비 유지보수, 정비, 소규모 보수공사 시 필요한 기기 및 공구의 작동 사용 기술, 각종 기계설비의 소규모 보수공사 시공 시 필요한 시공 기술		
직무수행태도	- 시설정비: 청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자세, 치밀하고 정밀한 안전 점검 업무 수행태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동료와 협력하는 태도		
필요자격	- 자격: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경력 유경험자 또는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자격	- 해당사항 없음		
직업기초능력	- 조직이해능력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직업윤리 - 자원관리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